

부산에코델타시티 디에트르 더 퍼스트(28BL) 근린생활시설 공급안내

- 신청자는 공급공고, 점포시설 용도 및 유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체결 전 해당 현장을 방문 확인 후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점포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점포관리, 영업 인허가 및 용도변경 등)과 인-허가에 따른 시설 추가사항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2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건축과-51601호 (2025. 10. 30)로 공급신고 수리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공동주택용지 28BL
- 공급대상 : 근린생활시설 2개동(연면적 2,488.2026㎡) / 근린생활시설 A동(1층 19호실), 근린생활시설 B동(1층 19호실)
- 공급방법 : 호실별 일반공개 경쟁입찰
- 공급면적 및 최저공급가격

[단위 : ㎡, 금액 : 원 / VAT 포함]

구분	층별	호수	공급면적(㎡)			대지지분	최저공급가격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계
근린 생활 시설 A동	1층	A-101	48.6400	47.2185	95.8585	47.8508	154,467,430	220,638,700	22,063,870	397,170,000
		A-102	30.7800	29.8805	60.6605	30.2796	95,806,650	136,848,500	13,684,850	246,340,000
		A-103	30.7800	29.8805	60.6605	30.2796	95,806,650	136,848,500	13,684,850	246,340,000
		A-104	30.3800	29.4922	59.8722	29.8861	91,680,160	130,954,400	13,095,440	235,730,000
		A-105	30.7800	29.8805	60.6605	30.2796	97,762,920	139,642,800	13,964,280	251,370,000
		A-106	30.7800	29.8805	60.6605	30.2796	97,762,920	139,642,800	13,964,280	251,370,000
		A-107	30.7800	29.8805	60.6605	30.2796	97,762,920	139,642,800	13,964,280	251,370,000
		A-108	30.7800	29.8805	60.6605	30.2796	97,762,920	139,642,800	13,964,280	251,370,000
		A-109	30.7800	29.8805	60.6605	30.2796	97,762,920	139,642,800	13,964,280	251,370,000
		A-110	30.7800	29.8805	60.6605	30.2796	99,719,190	142,437,100	14,243,710	256,400,000
		A-111	30.7800	29.8805	60.6605	30.2796	99,719,190	142,437,100	14,243,710	256,400,000
		A-112	30.7800	29.8805	60.6605	30.2796	97,762,920	139,642,800	13,964,280	251,370,000
		A-113	30.7800	29.8805	60.6605	30.2796	97,762,920	139,642,800	13,964,280	251,370,000
		A-114	30.7800	29.8805	60.6605	30.2796	97,762,920	139,642,800	13,964,280	251,370,000
		A-115	30.7800	29.8805	60.6605	30.2796	97,762,920	139,642,800	13,964,280	251,370,000
		A-116	30.7800	29.8805	60.6605	30.2796	97,762,920	139,642,800	13,964,280	251,370,000
		A-117	30.7800	29.8805	60.6605	30.2796	97,762,920	139,642,800	13,964,280	251,370,000
		A-118	30.7800	29.8805	60.6605	30.2796	97,762,920	139,642,800	13,964,280	251,370,000
		A-119	48.6400	47.2185	95.8585	47.8492	154,467,430	220,638,700	22,063,870	397,170,000
근린 생활 시설 B동	1층	B-101	48.6400	47.2185	95.8585	47.8492	154,467,430	220,638,700	22,063,870	397,170,000
		B-102	30.7800	29.8805	60.6605	30.2796	97,762,920	139,642,800	13,964,280	251,370,000
		B-103	30.7800	29.8805	60.6605	30.2796	95,806,650	136,848,500	13,684,850	246,340,000
		B-104	36.2475	35.1882	71.4357	35.6582	115,089,350	164,391,500	16,439,150	295,920,000
		B-105	36.2475	35.1882	71.4357	35.6582	115,089,350	164,391,500	16,439,150	295,920,000
		B-106	36.2475	35.1882	71.4357	35.6582	115,089,350	164,391,500	16,439,150	295,920,000
		B-107	36.2475	35.1882	71.4357	35.6582	115,089,350	164,391,500	16,439,150	295,920,000

	B-108	30.7800	29.8805	60.6605	30.2796	92,878,060	132,665,400	13,266,540	238,810,000
	B-109	30.7800	29.8805	60.6605	30.2796	97,762,920	139,642,800	13,964,280	251,370,000
	B-110	30.7800	29.8805	60.6605	30.2796	99,719,190	142,437,100	14,243,710	256,400,000
	B-111	30.7800	29.8805	60.6605	30.2796	99,719,190	142,437,100	14,243,710	256,400,000
	B-112	30.7800	29.8805	60.6605	30.2796	97,762,920	139,642,800	13,964,280	251,370,000
	B-113	30.7800	29.8805	60.6605	30.2796	97,762,920	139,642,800	13,964,280	251,370,000
	B-114	30.7800	29.8805	60.6605	30.2796	97,762,920	139,642,800	13,964,280	251,370,000
	B-115	30.7800	29.8805	60.6605	30.2796	97,762,920	139,642,800	13,964,280	251,370,000
	B-116	30.7800	29.8805	60.6605	30.2796	97,762,920	139,642,800	13,964,280	251,370,000
	B-117	30.7800	29.8805	60.6605	30.2796	97,762,920	139,642,800	13,964,280	251,370,000
	B-118	30.7800	29.8805	60.6605	30.2796	97,762,920	139,642,800	13,964,280	251,370,000
	B-119	48.6400	47.2185	95.8585	47.8492	154,467,430	220,638,700	22,063,870	397,170,000

- ※ 각 호실별 최저공급가격 및 낙찰가는 소유권이전비용, 취·등록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전용면적은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 기준으로 산출한 면적임.
- ※ 대지지분은 근린생활시설 호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의거 배분함.
- ※ 근린생활시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화장실, 복도, 지하주차장 등)은 공용면적으로 합산하여 호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의거 배분함.

■ 시설용도

시설용도	권장용도
근린생활시설	▶ 「주택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내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장 및 종교시설등 교육환경보호법 등 관계법령 및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금지하는 업종 일체 제외)

- ※ 상기 업종은 예시에 불과하며, 입점 업종에 대한 관할관청의 인·허가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 합계 제한이 존재하는 시설이 있으니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ex. 제4호 “가”목 공연장 및 “하”목의 부동산중개사사무소 등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가능)
- ※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인허가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허용도(「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가 있으니 신청 및 계약 전 관련 인허가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자(입점자)에게 있습니다.

■ 공급일정 및 구비서류

공급방법	호실별 일반공개 경쟁입찰	
입찰보증금 및 입금계좌	입찰보증금 : 신청호실 당 각 금일천만원 (금 10,000,000원) * 입금계좌 : 504-10-470216-1 (iM뱅크) 예금주 : 디비건설(주) * 온라인(무통장)입금만 가능하며, 견본주택에서 현금수납이 불가함	
공급일정	신청 접수 : 2025년 10월 31일(금) 11:00~12:00	▶ 개 인 : 입금증사본(무통장 입금증, 입금확인이 가능한 통장사본 등),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출)), 환불용 통장사본(입찰자 본인명의와 동일본만 유효) * [분양홍보관 비치] 입찰서, 입찰보증금확인서 ▶ 법 인 : 입금증사본(무통장 입금증, 입금확인이 가능한 통장사본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출)), 환불용 통장사본(법인 대표자 명의 또는 법인 명의와 동일본만 유효) * [분양홍보관 비치] 입찰서, 입찰보증금확인서 ▶ 대리인 : 본인(계약 예정자)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 존·비속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 아래 서류 추가 * 위임장(견본주택 비치), 위임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계약 예정자 본인 발급분), 대리인 신분증
	입찰(투찰) : 2025년 10월 31일(금) 11:00~12:00	▶ 입찰 당일 혼잡이 우려되오니 시간보다 미리 내방하시어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을 입금하여도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입찰하지 않을 경우, 유찰로 간주하오니 착오없이시기 바랍니다.	
	개찰 : 입찰 완료 후 즉시		▶ 호실별 최고가 낙찰자선정	
신청자격	▶ 개인 :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만19세 이상인 분[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포함] ▶ 법인 : 법인 또는 임직원이 관계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법인			
계약	2025년 10월 31일(금) 낙찰자 결정 후 즉시 (12:00~15:00) ▶ 기납부한 입찰보증금(일천만원)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합니다.	구비서류	개인	▶ 본 인 : 인감도장, 신분증, 인감증명서(부동산계약용),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입찰보증금액 외의 계약금 입금증 사본 또는 통장사본 ▶ 대리인 :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로 위임장(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및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첨부), 대리인의 신분증 ▶ 1인 2호실 이상 입찰 시 호실당 구비서류 필요
			법인	▶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법인 인감증명서 및 법인 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대표자 외) :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로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1법인 2호실 이상 입찰 시 호실당 구비서류 필요
입찰장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593-4 디에트르 더 리버 건본주택 1층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찰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부산에코델타시티 디에트르 더 퍼스트(28BL) 근린생활시설 계약 위임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신청자 서명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계약서의 서명은 접수받는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 본인이 직접 기재하도록 하며, 성명이 확인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 1) 입찰 신청자 1인당 신청할 수 있는 호실 수는 제한 없음.(다수 호실 입찰 신청 시, 신청 호실 수 만큼 입찰보증금 입금 필요)
- 2) 동일 호실에 동일인이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 결정방법

- 1) 점포별로 내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2) 동일금액의 최고가격 응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최고가격 응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를 주첨함에 넣어 즉석에서 무작위 주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3) 응찰가격이 최저 공급가격 미만일 경우에는 당해 낙찰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낙찰 무효된 점포는 별도 공고 없이 사업주체에서 공급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임의로 분양합니다.
- 4) 입찰에 의하여 선정된 자가 결격사유로 무효처리될 경우 차순위자를 당첨자로 결정합니다.
- 5) 제출된 입찰서는 개찰 전·후를 불문하고 취소, 교환 및 변경할 수 없습니다.
- 6) 입찰금액은 십만원 단위까지만 기재하여야 하며, 십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 입찰보증금

- 1) 입찰보증금은 각 점포별로 **금일천만원(금10,000,000원)**으로 하며, 유찰 시 입찰보증금은 개찰일 이후 14일 이내(영업일 기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환불계좌로 환불됩니다.
- 입찰보증금의 환불 시 환불금에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신청자와 반환받을 계좌 명의가 상이하거나 계좌번호 입력에 오류가 있을 경우 반환이 지연될 수 있음)
- 2) 납부방법 : 지정 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입금계좌 : 504-10-470216-1 (i뱅크) 예금주 : 디비건설(주)(안재현)
※ 무통장 입금 시 입찰하려는 호수 또는 입찰자명 기재(예 : “101호” 또는 “홍길동”)

■ 공통사항

- 1) 유찰, 낙찰 후 미계약, 계약 취소 또는 해제 등의 사유로 미분양 호실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임의로 공급함.
- 2) 상기 기재된 상가의 호수는 분양 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기이며 추후 입점지정일 전에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 호실 표기만 변경되는 것으로 점포의 위치가 변경되는 것은 아님)

■ 공급대금 납부방법

- 1) 납부금액

구분	계약금 (계약 시)	중도금 (25년 12월 예정)	잔금 (입점지정일)
납부금액	공급대금의 10%	공급대금의 40%	공급대금의 50%

※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낙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상기 중도금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 납부방법 : 아래의 지정 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하며, 지정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금원은 분양대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이뱅크(대구)	504-10-470216-1	디비건설(주)

■ 입점예정일 : 2026년 07월 경(정확한 입점일자는 추후 통보)

■ 중도금 대출 안내

- 중도금 금액 : 총 납입금액 중 중도금납입분에 한하며, 총 분양대금의 40% 이내입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주체는 공급금액의 40% 이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에 따라 분양 계약자에게 중도금 대출을 알선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분양계약 이후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대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으로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 금액은 계약자가 본인의 책임 하에 조달하여 납부조건에 따라 각 납부회차별로 직접 무통장 입금을 통해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중도금 대출 신청 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등 대출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최종 확인 및 대출 신청, 실행 및 유지는 계약자의 전적인 책임으로 하며, 대출신청 시 계약자의 신용불량 또는 타행 대출 등 계약자의 대출 결격 사유로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하는 지연이자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계약자는 관련 법령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규제 등), 금융 정책, 금융기관의 내부 규정 또는 계약자의 신용 상태 및 소득 등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및 한도 축소 등에 따라 중도금대출 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계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조달하여, 납부조건에 따라 각 납부 회차별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알선 시, 법인 등으로 계약한 경우 중도금대출알선이 불가하오니 별도 자금(시설운영자금, 현금)등으로 본인이 직접 조달하여 납부해야 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중도금을 계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조달하여 납부 조건에 따라 각 납부회차별로 직접 무통장입금을 통해 납부할 경우, 납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신청 관련 안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통보 및 안내에 대하여 의무사항이 없으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으로 인한 연체 등의 불이익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대출조건은 계약자 중 금융기관 대출자격 조건이 되는 분에 한하며, 대출 불가시 "계약자 본인의 책임"으로 직접 납부 하여야 하고, 대출 불가와 관련하여 계약을 취소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의 보증에 의하여 용자가 알선된 경우 제3자가 계약자의 분양대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보증인인 사업주체에 대하여 즉시 사전상환의무를 지며, 또한 계약자가 대출기관에 대해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자의 여신거래약정 위반, 기타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출금융기관이 사업주체에게 보증채무의 이행 또는 대위 변제를 요구 하여 사업주체가 이를 이행한 경우 분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은행은 사업주체와 금융기관의 협의내용에 따라 대출한도가 다를 수 있으며, 계약자는 금융기관에 본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대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대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각각의 중도금 약정일에 맞추어 직접 입금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하여 계약금(총 분양금액의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총 분양금액의 10%)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가령 계약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입금자명이 '동·호수' 또는 '계약자성명'이 아니라 확인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 미납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불이익은 계약자에게 있음)
-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였더라도 계약금 미납, 보증서 발급 불가, 대출한도 부족, 신용상의 문제 등 대출 결격사유가 발생할(또는 발견될)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입점지정기간 만료일이 경과하도록 중도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와 금융기관 간 사전 협의한 대출기간이 만료되어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 등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납부를 당사가 알선한 대출은행에서 대출로 진행할 경우, 중도금 납부기일로부터 최소 2주전에는 대출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출 신청 기간이내 미신청하여 대출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중도금 납부기일로부터 연체료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대출은행의 사정으로 대출 신청 및 대출 실행일자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주체는 변경된 중도금 납부일정을 서면 통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변경된 중도금 납부일정에 따라 대출 신청 및 중도금 금액 납부를 이행하여 하며, 미진행 시 계약서 조항에 따른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입점지정기간 만료일이 경과하도록 중도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와 금융기관간 사전 협의한 대출기간이 만료되어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니다.

- 중도금 대출 알선은 현재 미정이며, 계약자는 법령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중도금 납부를 통보할 의무가 없음)
-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점지정기간 내 입점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입점지정기간 시작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납부하되, 입점지정기간 시작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이후부터는 계약자의 실제입주일과 관계없이 계약자가 대출이자 등을 부담합니다.
- 일정 시점 이후 중도금대출승계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은 사업주체와 금융기관 간 협의내용에 따라 만기가 지정되어 있으며, 입점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만기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만기 연장의 의무가 없습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분양 상담 시 설명한 업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권장업종이고, 투자수익률, 주변 상가현황 등은 예시사항입니다. 반드시 부산 에코델타시티 지구단위계획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통합 제정·시행으로 최초 분양계약 등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으로 확대되고 ‘근린생활시설 분양계약’ 또한 신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최초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래당사자 공동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최초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합니다.
- 최초 분양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행정관청에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지연 또는 누락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 10% 이상 납부 후 전매할 경우, 전매계약에는 별도의 거래신고 의무가 발생하는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따른 법률 등에 의거해 전매계약 양도인과 양수인은 전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합니다. 계약자는 해당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의 이미지 또는 홍보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반드시 도면과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설명은 분양자료(안내자료 등) 및 열람도면으로 대체하며, 계약자는 분양계획 및 유의사항, 지구단위계획, 현장여건, 주변개발계획 등을 완전히 숙지 및 이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건본주택,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온라인광고 등) 등에 표시된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GTX, 공원, 녹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을 표기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여야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공고 이전 일부 홍보물과 홈페이지 안내자료는 설계변경 및 인허가 사항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으며 공급공고 이후 확정 안내자료 미확인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기간(12:00~15:00)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 상가의 모형 및 CG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추후 외부입면, 지붕형태, 기타 공용부위, 창호 등을 포함하여 단지 내 조경 및 시설물 등의 위치, 디자인 및 마감재 사양은 설계변경 및 디자인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점포의 시설기준은 사업주체에서 사용검사 받은 상태로 공급하며 기타 점포운영에 필요한 제반시설(점포의 칸막이, 진열대, 위생배관, 가스배관, 주방덕트 배관, 전기시설 및 전기용량 증가,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주방시설 및 간판 등)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 각 점포의 전기, 수도는 기본용량만 공급하므로, 입찰 및 계약 전에 사업주체에 확인바라며 확인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전적으로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 난방 및 취사를 사용코자 하는 경우, 가스배관설치 등 각종 인허가 사항과 내부배관, 계량기 설치 및 가스시설 부담금은 상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급수 요금은 상가 외부에 설치된 주 계량기의 검침에 의해 관할 상수도사업소에서 부과하며, 상가 계약자간의 협의에 의해 공용부분에 대한 사용량이 포함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가 천정 마감 내부에 수도계량기가 내장되어 있으며, 계약자는 수도 사용 시 수도 검침이 가능하도록 계량기를 하부벽면으로 이동 설치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학원, 교습소 등의 용도로 개업할 경우 관할 교육청의 최소 면적, 용도 등의 각종 등록, 인허가 조건을 확인하여 입찰바라며, 계약자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부산 에코델타시티 지구단위계획을 참조 바랍니다.)
- 영업업종은 법으로 허용된 사용 용도 내 업종으로 개점하여야 하고, 입점 및 입점 후의 중복 업종 개업에 대해서는 계약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상가 업종 제한과 관련한 보호책임이 없습니다.
- 계약자가 광고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건물의 안전성,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지정한 책임자에게 시공에 관한 관리 감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설치한 광고물 등이 관계법령에 위배되어 사업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 및 사업주체를 면책시켜야 하며, 광고물 등으로 인해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계약자의 전적인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 관리주체 및 상가관리자치위원회가 모두 구성된 이후에는 간판, 내·외부 광고물 등에 대한 사항은 관리규약 및 상가관리자치규약에 따르며, 규약 위반 시 발생하는 문제사항들은 계약자들이 책임과 비용 부담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분양광고안내의 상가 내·외부 광고물 계획 및 설치관련 사항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에서 발췌한 내용이며, 개정 된 지자체 지침 및 법령 확인 후 설치 해야하며, 이행하지 아니할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계약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사업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 부지 및 단지 내 상가의 도로점용권 설정·양수 절차에 공동으로 참여하며, 도로점용에 따른 의무를 자신의 점용 면적 또는 지분에 해당하는 범위내에서 인수하고, 관할 관청에 대하여 그의 부담분에 해당하는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도로점용료의 산정방법은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릅니다. 또한,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공동점용 관계자와 협의하여 도로점용권의 양수 및 의무의 인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 체결,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등 관련 절차를 진행·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이를 해태하거나 불이행하여 그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계약자의 부담분에 해당하는 지연기간의 도로점용료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도로점용기간 중에 차량진출입로의 파손 또는 훼손으로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는 관할지자체와 협의 하에 계약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분양사업장,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계약자는 본 표시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집압관리를 위해 동법에서 지정하는 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법적책임과 화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제반 피해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점일과 관계없이 관계기관의 인허가 및 사업주체의 일정에 의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영업허가를 득해야 하는 업종(예 :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은 유의 바라며, 입점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영업허가 가능 유무는 계약체결 전 계약자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원시공 하자발생 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원칙은 당초 시공된 마감재 및 재료 등으로 보수가 진행되며, 사업주체는 계약자가 개별로 인테리어를 시행한 부분에 대해 원상회복을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테리어 공사 부분에 대하여 사업주체, 시공사에게 하자 보수 및 보상 의무가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정해진 실외기실 위치 외에 시공하여 생긴 민원, 훼손 등에 대한 부분은 계약자가 문제해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실외기는 근린생활시설 실외기실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 상가 호실 인근 실외기실, 소화펌프실, 통신실, 제연실, MDF실, 저수조 등의 각종 설비공간이 지상 및 지하에 설치되어 소음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들은 입점 전에 '상가자치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점 후 상가의 제반 관리를 자치적으로 하여야 하며, 입점지정기간 최초일부터 상가에 대한 제반관리는 '상가자치관리위원회' 또는 '계약자'가 하셔야 합니다.
- 입찰 방해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위법행위로 낙찰되었음이 판명될 경우, 해당 낙찰은 무효로 처리하고, 기납부된 금액 일체는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 점포의 용도변경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안에서만 가능하며, 당해 인허가 관청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필요가 있는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사업주체에게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세금계산서 수신용 이메일 주소를 「7990@dbcons.co.kr」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사실에 대한 미 통보 및 통보지연, 지정된 이메일 주소 외 다른 수단을 통한 제출, 사업자 미등록, 부가세 미 신고 및 누락 등에 따른 부가세 미환급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이 경우 사업자등록 및 이메일주소 통보의 입증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계약자가 위 서류를 제출한 날 이후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계약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등 관련 업무는 계약자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하여야 하며, 사업주체가 대행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 계약을 체결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함에 있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인테리어 공사 및 입점은 사용승인을 득하고 분양대금 등을 완납한 후, 사업주체의 입점확인증을 교부받은 이후에 가능하며, 계약자는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지연,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지연 등의 사유로 잔금납부 전 인테리어 공사 선행 허가를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입점확인증을 교부받기 전 무단으로 인테리어를 진행할 경우, 사업주체는 이를 불법 인테리어로 간주하고 계약자에게 인테리어 공사 시작일부터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형사상 고소·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계약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 및 은행 융자 시 소요되는 제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부담금(전기, 수도, 가스, 지역냉난방부담금, 제세공과금 등) 및 내부 규약에서 정한 관리비 등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물은 입점자(소유권자 및 임차인) 임의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 호실의 시설기준은 사용검사 받은 상태로 공급하며, 기타 영업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 및 추가 제반 시설은 관계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미 준수 시 이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개별 인테리어공사로 발생하는 쓰레기, 폐기물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입점 후 개별 인테리어에 의해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고, 관련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요구 및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인테리어 및 각종 설비공사 등을 위해 공용부 마감 등을 훼손한 경우 계약자가 원상회복 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책임을 집니다. 단, 계약자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당해 건물의 제반 훼손부분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금 10%를 전액 완납한 후 사업주체가 지정한 전매신청기일에 가능합니다.
- 계약자들은 간판 등 옥외광고물 부착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내부 및 외부의 시설 또는 간판의 설치 시 수량 및 사이즈를 임의대로 설치할 수 없고, 설치 전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후 해당 구역에만 시공해야 합니다.(관련 규정은 제·개정될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관할청에 확인 바랍니다)
- 계약자들은 내(유리 포함), 외부에 광고물 등(간판 및 광고물의 시설, 안내판, 조형물, 기타 표시물 등 이하 같음)을 부착, 설치하고자 할 경우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가 및 단지의 미관을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광고물 추가 및 변경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등 추가 공사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광고물 등 부착 및 설치 이후라도 관련기관의 시정명령, 처분, 민원 제기 등의 경우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들은 광고물 설치 시 발생하는 주변 마감재 훼손의 경우 전적으로 계약자들의 책임과 비용 부담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계약자들의 계약 해지, 계약 만료 시 부착하였던 광고물은 회수 및 폐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광고물 회수 시 발생하는 마감재 훼손의 경우 전적으로 계약자들의 책임과 비용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상가 이용 주차는 36대(장애인 전용 주차장 2대 포함) 가능합니다.
- 상가 이용 차량은 아파트 세대주차장 이용이 불가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단지 내 지하1층 한 곳에만 위치하므로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에 주차 후 이동 시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 계약 전 주차장의 위치 및 상가와의 거리 등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들은 사업계획승인도서 상에 표시된 진입로 및 주차장 기타 부대시설 이외의 도로에 대해 추가 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이후에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용승인 전과 분양대금 완납 이전에는 점포 내부 및 외부에 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각 상가별 조정 식재 사항 및 각종 시설물은 현장 및 설계도서를 확인하고 입찰 및 계약체결 바라며, 상가 주변의 조정 식재는 아파트 및 상가 미관을 고려하여 식재할 계획이므로, 사전에 충분히 설계 도서 등을 통하여 식재계획에 대해 인지 바라며, 준공 시 일부 수종 및 시설물 위치, 포장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 상가와 인접 동의 입주자들로부터 상가 영업과 관련하여 사생활 자유 일부 제한, 소음 및 냄새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가 영업과 관련한 민원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은 지상1층에 설치되므로 실외기실과 인접한 호실에서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소음 민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관련된 민원 해결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점포 내 별도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확정측량결과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인한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A, B동 부출입구에는 문주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해당 위치를 확인하고 입찰 및 계약 체결 바라며, 문주 등의 설치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민원 및 기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물의 명칭, 동, 호실표시, 외부색채 등은 마감재 계획 디자인 개선 및 관계기관의 협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내, 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종측량성과도 및 택지조성계획 변경에 따라 도로 폭 및 도로레벨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단지경계부의 높이차에 의해 상가 전·후면부에 계단 및 램프, 플랜터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상가 전면 포장 및 시설물 등은 디자인 개선 및 관계기관의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가 전·후면부에 계단 및 램프, 플랜터, 스탠드, 휴게시설물 등이 설치 혹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상가 전면 포장 및 시설물 등의 변경에 대하여 개별적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추후 개인의 취향이나 민원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택지조성 계획 및 단지 와·내부 레벨차이로 인한 상가 출입구 인근에는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차로 인해 천재지변(태풍, 돌풍을 동반한 집중호우, 국지성 호우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불가피한 사항 및 강화우리 도어 틈새로 유입되는 빗물에 의한 피해 발생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쓰레기집적소는 근린생활시설 A, B 중앙 필로티 후면(단지내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에 따라 쓰레기집적소 이용 편의가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입점 전 위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가는 공동주택 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함으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 계좌로 무통장입금(입금자명은 호실 또는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한 후 무통장입금 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해야 하며, 계약당일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귀책사유, 단순변심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 따른 위약벌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서면 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잔여 분양대금은 변경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고, 만일 계약자의 계약서상의 주소지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 후 1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서면(주민등록등본 제출 등)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각 분양대금의 납부기일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분양계약서에 따른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영업일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입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취소할 수 없고 접수된 서류를 정정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쇄물·광고물 등에 표현된 배치도, 조감도 및 투시도 CG 이미지의 표현된 외관디자인 및 조정, 시설물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나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추후 관계청의 인허가 사항, 디자인 개선 및 시공 시 구조 등의 안전성 및 입점예정자의 이용효율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영향평가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고, 오타 및 오출력 등으로 내용이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과 현장을 방문 후 직접 확인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행정기관의 정책, 계획의 변경 등의 사정에 따라 향후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본 상가 시설물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주택법」 제1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 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체결 이후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설계변경에 따른 기타 부속시설 등 공용부분의 위치 및 면적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점포 내 천장에는 설비(급수배관 등), 도시가스, 냉난방기 배관 등이, 바닥에는 오배수배관 등이 설치되며 입주자의 무단 철거 및 훼손은 불가합니다. 또한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냉매 배관이 설치되어 냉난방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위치가 정해져있어, 멀티형 냉난방기 설치를 권장하며, 일반형의 경우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추후 입점 전에 해당호실에 대한 상태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하며, 해당사항과 관련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계약 전 관련도면을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상가 내 설치된 스프링클러 배관은 입주자의 무단철거 및 훼손이 불가하며, 변경 시 관할 소방서 신고 또는 허가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 별도의 환기시설이 필요한 점포는 입점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경관조명 및 각종 상가 홍보시설물의 유지, 보수로 발생하는 전기료, 시설보수비, 인건비 등과 기타 상가의 유지, 관리비용 일체는 실제 입점증 발급일로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입점지정 기간 이후에는 계약자의 잔금납입 또는 입점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이를 부담합니다.
- 경관조명 및 기타 상가의 시설물 설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선기구, 조명기구의 위치, 제조사, 디자인, 기능, 재질, 수량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전 패드는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므로, 패드 설치 위치를 계약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변경 요청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가 외벽에 접한 상가의 경우, 전용면적 대비 실사용 면적에서 다소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격에는 변동이 없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의 분양 이후에는 최초 낙찰자와 최종 입점자 또는 최종 계약자가 상가 관리 및 운영,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주체의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후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 분양대금을 예정일보다 선납하더라도, 선납에 대한 분양대금 할인은 없고, 실입점일이 입점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분양대금을 실입점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가 상기 입점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자를 입점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기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계약서에서 정한 연체요율을 적용한 지체상금을 지불하거나 이를 분양 잔여대금에서 공제합니다. 단, 상기 입점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입점이 개시될 경우, 별도의 지체상금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또는 사업주체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 출토, 멸종위기종 서식지 발견,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 중지 결정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하기로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지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 및 연체료, 미납관리비 등을 지정한 기일 내에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한 제반서류 및 비용(선수관리비 납부 영수증, 중도금 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 대출에서 담보대출로 전환(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잔금 납부 영수증, 도로점용료 인수인계서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및 완납한 후에 입점일이 명시된 입점증을 발급 받아 입점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점 시 사업주체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선정된 관리주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후 사업주체가 안내하는 입점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입점지정기간 내에 입점할 경우 실입점일로부터)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점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세대 관리비는 입점지정 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입점지정기간 내 입점 시에는 실입점일(키볼출일) 또는 입점증 발급일 중 빠른날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후, 입점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 문제(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 등)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입점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표시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점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입점지정기간 종료일 이전에 입점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실입점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점증 발급일 중 빠른 날로부터 계약자가 제세공과금을 부담합니다. 만약, 계약자의 납부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를 배상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완료할 예정이나, 관계당국 업무처리 지연 등 사업주체의 귀책없는 사유로 준공일 또는 입점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점지정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총 분양대금 및 기타비용을 완납하고, 계약자의 비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한 후에 입점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소유권 이전절차를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반피해 및 공과금(과태료 포함)은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행정명령, 기타 택지개발사업 미사용승인, 공부 미정리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절차가 지연될 경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잔금은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점지정기간 종료일 또는 실입점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득하여 입점하는 경우에 전체 입주금의 90%는 입점일에 나머지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 사업주체가 지정한 기간에 납부해야 합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외의 사항은 계약서상의 내용을 준용합니다.
- 각 점포의 기본 전기용량은 점포 당 5KVA이며, 공용부 용량을 포함한 총 전기용량은 근린생활시설A 약 244KVA, 근린생활시설B 약 173KVA로 배정될 계획입니다. 추후 점포구획 변경 및 현장 상황에 따라 전기용량은 변경될 수 있으며, 호실별 전기 용량증설 및 안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가자치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다수의 호실을 분양받아 이를 일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를 준용하여야 하며, 해당 호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를 초과할 경우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6호)"제 6조에 준하여 출입문을 방풍구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본 상가는 도시가스설비가 적용되며, 상가 내 천장공간 또는 인접세대의 PD(pipe duct) 공간에 공용설비(도시가스, 소방설비, 위생설비, 냉난방설비, 환기설비 등)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상가자치관리위원회의 대표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상가 입점 여부와 관계없이 상가자치관리 위원회의 책임과 비용하에 선임 및 운용하여야 합니다. 관련한 법률 위반으로 인해 사업주체에게 벌금 등 손해가 발생할 경우 상가자치관리규약에 입점 계약자들이 그 책임을 각 부담하여야 합니다.
- 상가 호실 내 기동으로 내부 공간에 요철 발생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전용면적 대비 실사용 면적이 감소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도면 확인 바랍니다. 이와 관련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가시설 이용자는 아파트 입주자를 위해 설치된 커뮤니티 시설,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E/V, 계단 등 각종 공간 및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 및 공유, 점유, 소유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가 내 대지 및 근접해있는 대지(지하주차장 등)에 설계 및 시공된 기계설비(급수, 급탕, 오배수배관 등), 전기설비(전기배관 등) 등 각종 시설물 및 설비류 일체에 대하여 점유 또는 소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배치 상 기계/전기설, 발전기설, 급배기구, 오수 및 쓰레기 집하장, 최상층 통기배관 등에 인접한 호실은 냄새, 소음, 진동 및 해충 등으로 인하여 환경권이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한 다음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가자치관리위원회의 대표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를 선임 및 운용하여야 하며 동법 제30조에 따라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 제87조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제1항 및 동조 제4항에 의거하여 매월 자체검사(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입력), 연 1회 정기검사(승강기안전관리공단) 실시 및 검사 결과를 관련기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관련 법률 위반으로 인해 벌금 등 사업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상가자치관리위원회가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옥상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출입이 금지되고 출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 옥상은 관련법규에 따른 인허가 및 건축(경관)심의 권고에 따라 본 공사 시 그 형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홍보물에 표현된 옥상 구조물의 크기, 위치, 모양, 색상 등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고 변경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상가 전, 후면 휴게공간 및 휴게시설물 등은 설치 혹은 삭제될 수 있으며, 상가 전·후면부에 계단 및 램프, 플랜터, 스탠드, 휴게시설물 등이 설치 혹은 삭제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상가는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하며, 항공기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한 다음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본 계약서는 2023.01.01. 개정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균등납부 하기로 합니다.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계약자 부담분)를 부담하여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형태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더라도 수분양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환불 대상이 아니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최초 분양계약에 한하여 인지세 1/2(각각 50%씩 납부)부담하며, 최초 분양계약 후의 거래(분양권 전매 포함) 등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 - 무(과소)납부 세액의 [3개월 이내 : 100퍼센트 가산],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200퍼센트 가산], [6개월 초과 : 300퍼센트 가산]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대상(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이므로 동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과소)납부 및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 전자수입인지 분실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납부방법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 및 은행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분양계약자 부담분 납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이오니 참고바랍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 번호
입점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	₩ 5,716,825,000 원	제 01212025-101-0004800 호

■ 분양보증 주요 내용

○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택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택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칩.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제2조[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택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택무자가 대물변제 · 허위계약 ·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택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택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택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을 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택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택무자 등과 공동관리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택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택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택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택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택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택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택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4조[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택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택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택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기타사항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한 것으로 합니다.
- ※ 근린생활시설 공사진행 정보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근린생활시설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 상세내용은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랍니다. (☎ 1566-9009)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호	디비건설 주식회사	대방건설 주식회사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72, 2층 204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72, 5층
등록번호	285011-0252994	110111-0757158
대표번호	031-902-6887	02-2181-9400

■ 위치 및 분양문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593-4 디에트르 더 리버 건본주택 1층 (☎ 1 6 8 8 - 5 8 0 0)

■ 홈페이지 : www.detre-eco.co.kr

■ 본 공고에 기재된 내용은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 및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사업주체 건본주택 및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